

# 원산지제도

崔永學\*

## 1. 원산지제도 시행배경

정부는 1980년대 이후 개방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수입자유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일부 농축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수입자유화되었다.

이러한 수입개방의 결과 국내의 소비자는 다양한 외국제품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게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저가의 외제품을 원산지표시 없이 수입하여 고가의 국산품으로 위장, 판매하거나 국내기업이 해외투자후 현지생산한 제품을 수입하여 국산품으로 표시한 후 판매

〈표 1〉 수입자유화 추이

(단위 : %)

품목	연도	수입자유화 추이 (%)						
		1983	1984	1988	1989	1990	1991	1992
전체		80.4	93.6	94.8	95.5	96.3	97.2	97.4
농축산물		56.6	65.3	71.9	76.1	80.4	84.6	87.2
공 산 품		81.9	96.6	99.5	99.5	99.7	99.9	99.9
화학, 철강 금속, 기계 전자, 전기 섬유제품		—	—	100.0	100.0	100.0	100.0	100.0
		80.4	97.7	98.4	99.4	99.5	99.6	99.6

\*商工部 貿易政策課

하는 등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판매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소비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개방화추세가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상공부는 공정한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 2. 원산지제도 실시

현행 원산지제도는 크게 '원산지표시'와 '원산지규정'의 두 가지가 주요내용이며, '원산지표시'라 함은 수입물품의 외부, 즉 눈에 잘 띠는 곳에 'MADE IN 국가명' 등 원산지 국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원산지규정이라 함은 이러한 원산지표시를 통관시 확인할 때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 즉 '원산지결정(판정)기준'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원산지규정의 핵심으로 한국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는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경기준으로 되어 있다.

### 가. 원산지표시제도

#### (1)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현행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일반 소비대중이

직접 구매, 사용하는 품목 및 우회수입의 우려가 큰 품목으로 의류, 가전제품, 공구, 신변용품, 완구, 문구, 식품류 등 소비재를 주대상으로 선정하여 1991년 7월 1일 시행시 HS 4단위기준 326개 품목을 1992년 4월 1일 농수산물을 주로 하여 204개 품목을 추가하여 현재 530개 품목이다.

### (2) 원산지표시 면제대상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라 하더라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한 경우 개인 앞으로 무상송부된 택송품·별송품, 여행자 휴대품,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소비용품, 원산지표시비용이 당해물품의 경제적 가치보다 커 표시가 불가능한 물품, 20년전(수입시점기준) 생산물품, 환적 등에 의한 단순 경유물품, 재수출조건부 면세상 물품 등 일시 수입품, 재수입 수출품, 외교관면세 대상물품, 종류·성질·형상·상품·생산국명·제조자 등에 의해 최종소비자가 쉽게 원산지를 알 수 있는 물품 및 제조업자(사업자등록증상)가 판매 또는 임대 목적이 아닌 직접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조용 시설·기계류로 실수요분으로 확인된 경우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 (3) 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표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최종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형태와 방법으로,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후 최종 구매자가 구매하기 전에 다른 물품과 조립되어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부품만의 원산지를 따로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나. 원산지결정기준

### (1) 완전생산기준

한국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완전생산과 실질적 변경기준이 있으며, 완전생산기준은 당해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이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채취된 천연생산품 또는 천연생산품으로 물품의 전부를 제조한 상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원산지 불명의 원료나

수입원료가 포함된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2) 실질적 변경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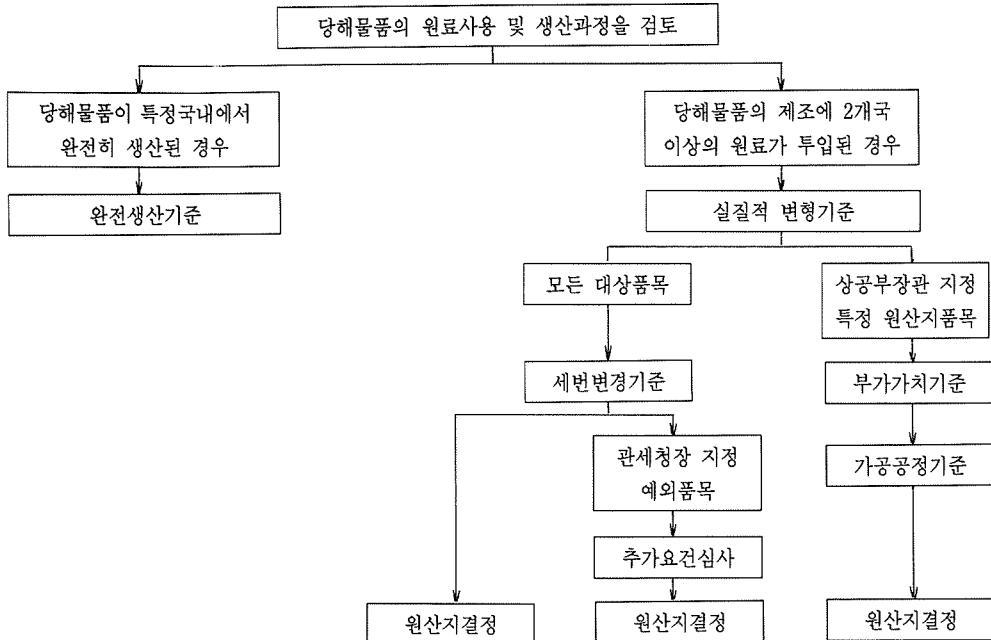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구성품으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실질적 변경기준을 채택하여 원산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완전생산품의 원산지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제외된다. 실질적 변경기준은 약간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및 주요공정기준으로 나누어진다.

세번변경기준은 제품의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원재료 또는 부품의 세번과 이로부터 생산된 제품의 세번이 상이할 경우 해당공정이 일어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이고, 부가가치기준은 특정기준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경우 해당공정이 일어난 곳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이며, 주요공정기준이란 생산과정상 거쳐야 하는 주요공정을 파악한 후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공정이 발생한 장소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실질적 변경기준을 당해국에서 제조 또는 가공공정을 통하여 변화하는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을 HS 6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세번변경만으로 실질적 변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품목은 부가가치기준 및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며, 부가가치기준의 적용은 당해물품의 부가가치의 35% 이상을 생산한 국가로 하며, 35%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한 국가가 없거나 2개국 이상의 경우는 주요부품을 생산하거나 주요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하는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정국에서 당해물품의 제조·생산에  
투입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누계  
$$* \text{부가가치율} = \frac{\text{특정국에서 당해물품의 제조·생산에 투입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누계}}{\text{당해물품의 수입가격(FOB)}}$$

〈표 2〉 원산지기준의 적용절차도해



### 3. 원산지규정에 관한 주요 국제규범

#### 가. 교토협약

관세협력위원회(Customs Cooperation Council, CCC)는 1973년 5월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국제적 조화를 통하여 국제무역의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교토협약(Kyoto Convention)을 승인하였으며, 본 협약에 원산지규정에 관한 부속서( $D_1$ ,  $D_2$ ,  $D_3$ )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특별한 원칙의 선택보다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원칙을 망라하고 있다. 그러나, 본 협약은 103개 CCC가맹국중에서 미국, 일본, EC를 비롯한 50개국만이 가입을 하였으며, 더우기 원산지 부속서를 수락한 국가는 EC, 일본을 비롯한 20여개국에 불과하고 또한 가입국들도 특정규정을 유보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 이 협약은 국제적인 규범성도 결여되고 통일기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1) 원산지결정에 관한 부속서( $D_1$ )

원산지결정기준으로서 ‘완전생산기준’과 2개국 이상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에 대하여서는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이 발생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이른바 ‘실질적 변형기준’을 제시하고, 실질적 변형의 판정기준으로 ‘세변변경기준’, ‘주요 가공공정기준’ 그리고 ‘부가가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원산지결정에 있어서의 특수 경우로서 기계·기구 및 차량의 부속품, 그리고 예비부품·공구의 원산지는 해당 기계·기구 및 차량과 동시에 수입, 판매될 때에 그 종류와 갯수가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원산지로 판정하며, 미조립품 및 분해물품을 분할수입할 경우에도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서 단일물품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포장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용품과 동일한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본 부속서에는 특수한 지리적 이유가 있거나 해당물품이 타국에서 전시되었다가 수출되는 등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물품이 운송도중에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가공공정을 거치는 경우를 방지하고 있다.

#### (2) 원산지증명서류에 관한 부속서(D<sub>2</sub>)

본 부속서에는 특혜관세의 적용이나 여타 무역절차상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입국의 세관당국이 허위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수입국의 세관당국이 원산지 확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여러가지 원산지 관련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것이다.

### 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각국의 원산지규정의 비명료성과 이의 차별적 적용 등으로 인하여 동 규정이 비관세장벽화함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참가국들은 비관세협상부문의 다자간 규범제정 대상조치로서 조화된 원산지규정(Harmonized Rules of Origin)의 제정을 꾀하여왔다.

당초에는 원산지규정의 예외없는 적용과 협상 결과의 무차별적 적용을 주장하는 미국 및 일본 측과 예외의 인정은 물론 협상결과를 비특혜 교역에만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EC 사이의 심한 입장차이가 노정되었으나, EC측 주장이 수용됨으로써 객관성, 예측가능성, 명료성 및 일관성에 입각한 원산지규정의 통일작업이 합의되었고 주요 합의사항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① GATT의 원산지규정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관세협력위원회(CCC)내의 기술위원회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종료후 3년 이내에 통일 원산지규정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특혜무역 관련 원산지규정도 기술위원회가 작성할 규정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③ GATT체제하의 모든 조치, 즉 관세양허,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의 적용, 그리고 쿼터의 실시

등에 있어서 원산지규정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④ 원산지 판정기준에 있어서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세번변경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기준 및 가공공정기준으로 보완하였다. 다만, 판정기준은 Positive Standard, 즉 원산지로 판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 4. 각국의 원산지표시제도와 원산지규정

#### 가. 미국

원칙적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통상관세법 § 1304 및 1989년 종합무역법). 원산지표시는 상품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영구불변의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물품의 성격상 원산지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상품의 훼손없이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수입자의 자가사용품 등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 의무를 불이행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 감독하에 원산지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거나, 재수출, 파기 또는 과징금(과세가격의 10%) 납부후 통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산지표시의 손상, 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5,000달러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원산지규정은 교토협약의 규정을 기본 규정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을 채택하고 실질적 변형의 판정기준으로는 부가가치기준을 주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물품에 따라서는 가공공정기준,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실질적 변형기준은 물품의 종류, 교역상대국, 정책목적에 따라 상이하게 운용되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나. EC

EC연내국가간 교역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표

시의무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EC역내국가간의 교역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자국산품보다 수입상품의 마케팅을 어렵게 함으로써 수입규제와 동등한 효과를 초래하는 조치에 해당되며, 따라서 EEC조약 § 30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EC 역외국가와의 교역에 있어서 원산지표시제도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하여는 각국의 재량에 일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의 경우는 EC 역외국가와의 교역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규정은 없으나 원산지 허위표시 및 허위표시상품의 수입은 금지하고 있다.

독일은 EC 역외국가와의 교역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규정은 없고 수출입물품에 부당표시를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부당표시부착물품은 세관에서 압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부당표시의 일종으로서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수입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원산지 표시의무는 없으나 수입물품중 프랑스 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원산지 허위표시 상품의 판매,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원산지표시는 반드시 프랑스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스페인은 EC 역외국과의 교역물품에 대하여 모두 원산지표시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C 역시 기본적으로는 교토협약의 원산지규정을 수용하고 있다.

완전생산기준의 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실질적 변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가공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 및 세번변경기준을 복잡하게 혼용하고 있고, EC-EFTA 자유무역협정체결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는 누적합산하여 원산지를 결정(누적원산지기준)하는 등 정책목적, 물품, 교역상대국 등에 따라 복잡·다기하게 운용하고 있어 대EC 교역국은 원산지규정을 중요

한 무역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 다. 일 본

일본은 수출입취인법, 부정경쟁방지법, 경품표시법 등 각 개별법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및 원산지 허위표시물품의 수출입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류 및 가전제품, 화장품, 자동차, 피아노 등 30종의 제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역시 원산지규정은 교토협약의 규정을 수용하고 있으며, 완전생산기준과 아울러 실질적 변형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바,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을 혼용하고 있다. 동시에 일본산 원재료는 수출국 생산원료로 간주하고 ASEAN 6개국은 1개국으로 간주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는 등의 독특한 기준도 사용하고 있다.

#### 라. 기타 국가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의 선발개도국은 원산지 허위표시 및 허위표시 부착상품 교역금지,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일부품목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고, 원산지기준은 교토협약의 기준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마. 각국의 입법례 검토결과

원산지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각국중 미국은 공정무역거래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모든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불표시물품에 대하여는 표시를 부착하게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표시 훼손행위를 처벌하는 등으로 가장 강력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C, 일본 등 여타국가는 주요 관심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여타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를 강제하지는 않으나, 허위 원산지표시에 대하여는 엄격히 규제(수출입금지 등)하는 등으로 자국의 정책목표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